

양식 제1호

# 공 고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 제11대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장 후보자 등록

2020년 11월 3일( 화 ) 10시부터

2020년 11월 4일( 수 ) 17시까지

2. 회장 후보자 기호추첨

2020년 11월 05일( 목 ) 10시

3. 회장 선거

- 일 시 : 2020년 11월 14일

- 장 소 :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 회의실

영암군 영암읍 잠곡동길13 (☎472-3458)

2020년 10월 05일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도 협회장 및 시군협회장 선거에 관련하여 종합사항.

## 1. 도 협회선거관리위원회 설치기준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선거인 수의 배정
2. 제8조에 따른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3. 제9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4. 제10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6.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어떠한 분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모실 것인지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의위원으로 구성하며, 도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입후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도 협회와 관계있는 위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부회장 중에서 도 협회 인준을 받고, 시. 군 체육회 인준을 받은사람에 한함) 대행하려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0.09.15.>

※ 도 협회의 경우 (규정 3조2항을 시행세칙으로 개정하여 시행)

②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은 도 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조 2항을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여건이 개선 될 때까지 중단하고, 영암군관내 거주하는 도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2020. 9. 28. 개정)

3. 시. 군 협회장을 재출마 하고자 협회장님은 선거일전 50일전에 사퇴하여야 함. 회장님이 아니고 임원(시.군 및 도 협회 및 여타협회)은 선거 위원회설치일전에 사퇴하여야 함. (사무국에 제출하면 이사회를 개최하고 직무대행자를 심의 결정하고 (도 협회에 회의록 참석자명단과 인준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준을 받은 후 시.군 체육회에 재 승인을 받아야 직무대행자가 된다.

#### 4. 선거일 및 투표시간 결정방법

가. 회장 선거는 2021년 1월말 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예시)

회장선거를 2021년 1월20일 실시한다면 회장님의 사퇴는 50일 전이므로 2020년 12월1일에 사퇴해야 합니다.

(예시)선거관리위원회설치일자 및 임원의 사퇴의 경우

제16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도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일 전일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 5. 투표시간결정방법

제24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단아야 한다.

※ 도 협회의 경우 13:00~13:30(30분) 후보자 소견발표

13:40~15:00(80분) 선거인 투표

#### 6. 선거운동의 제한행위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공약사항, 후보자자기소개,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선거인(선거인단) 제시

제4조(선거인) ① 도 협회 규약 제19조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협회 규약 제7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시군회장)

2. 시·군 협회의 임원

3. 지도자 (해당없음)

4. 심판

5. 선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선수이었던 사람 (해당없음)

6. 게이트볼 동호인 <개정 2020. 09. 15.>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거인은 제1항 다른 호의 직군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없다.

## 6. 시군협회 선거인 후보자 (사전예시) 선거일전 35일

가. 도 협회에서 통보가 되면 4일 이내에 제4조에 의한 배정받은 선거인을 3배수로 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

이사회 의결일:    년    월    일

단체명	직군	대표분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비고
시군명							

나. 시 군협회장 단독으로 결정하지 말고 이사회 의결을 얻어 후보자를 3배수 명단을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2020. 10월10일 후보자배정통지 예정일, 도 협회 보고일 2020. 10, 13일)

③ 선거인 또는 선거인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9세 이상일 것
2. 선거인이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았을 것
3. 선거인이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7. 시군협회 선거인후보자에 대한 도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취합  
 . (2020. 10월15일~10월19일)

8. 추천 선거인 후보자 명부작성  
 추천된 선거인에 대하여 명부작성 (2020. 10월20일)

9. 추천에 선정된 선거인명부 작성 (2020. 10월29일)

10. 확정선거인명부작성 (2020. 10월30일)

11.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후보자 등록 시 결격사유게시 (시군에  
 통보) (2020. 20일~26일까지)

12. 선거인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2020. 10월30일~11월1일)도 협회

13. 후보자 등록. 기탁금 수입. 후보자 공고 (2020. 10월31일~11월1일)

14. 후보자 기호추첨 (2020. 11월2일)도 협회  
 (후보등록 시 유의사항)

제13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로 한다)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류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
4.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개정 2020.09.15.>](#)
5.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퇴임 증명서 협회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7.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공약사항 및 자기소개서

9. 명함판 사진5매

10. 도 협회 및 시 군 협에 협찬금 증명서류

11. 회원증보유기간 2년 이상자

12. 이 력 서

13, 후보자 징계사실 확인서 (시. 군 및 도 협회임원 재임 자는 각각의 확인서)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범위를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체육단체의 규약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협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25일전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09.15.>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⑦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5. 후보자 등록 공고 (2020. 11월2일) 도 협회 및 시군협회 통보

### 16. 1인후보자 등록 시 조치사항

제28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09.15.>

## 17.도 협회 회장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통보

1. 위촉하고자하는 선거관리인수 7인 (외부인 5명 내부인 2명)

직명	성명	구분	주소	연락처	비고
위원	박정호	외부인	영암군영암읍	010-4608-9911	법무사
위원	조영률	외부인	영암군영암읍	010-5472-3963	행정출신
위원	배원식	외부인	영암군영암읍	010-3604-3666	생활체육
위원	최경호	외부인	영암군군서면	010-5656-5855	교육출신
위원	한창국	외부인	영암군영암읍	010-6627-6002	언론출신
위원	최종덕	내부인	영암군군서면	010-3614-0133	생활체육
위원	김용귀	내부인	영암군시종면	010-2008-8149	생활체육

도 협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불시에 시. 군을 방문 감시 할 것임.

18. 시군협회 2020년9월말일 기준 회원현황  
“불임과 같음”

19. 도 협회 시행세칙  
“불임과 같음”

2020년 시군협회 목표(기준회원 및 신규 회원) 대 실적평가서

(2020년 9월30일 기준)

전라남도계이트볼협회

구분 시군별	기준회원목표 (승계. 전입포함)					신규회원목표					20년 종합목표평가				
	19년말 회원수	사고예상율 (-10%)	20기준 년말목표(A)	실적	%	순위	19회원의 (+20%) (신규(B))	실적	%	순위	목표 A+B=C	실적	%	선거 인단 배정 인원	
광양	226	22	204	146	71		45	24	53		249	170	68	3	
나주	227	22	205	175	85		45	21	46		250	196	78	3	
목포	144	14	130	142	109	②	29	14	48		159	156	98	3	
순천	381	38	343	286	83		76	32	42		419	318	76	4	
여수	184	18	166	155	93		37	26	70		203	181	89	3	
강진	226	22	204	211	103	③	45	22	49		249	233	93	4	
고흥	266	26	240	209	87		53	11	20		293	220	75	4	
곡성	158	15	143	138	96	⑤	31	10	32		174	148	85	3	
구례	123	12	111	105	94		24	26	108	④	135	131	97	3	
담양	194	19	175	151	86		39	45	115	③	214	196	91	3	
무안	147	14	133	138	103	③	29	38	131	①	162	176	108	3	
보성	203	20	183	180	98		40	50	125	②	223	230	103	4	
신안	161	16	145	131	90		32	9	28		177	140	79	3	
영광	200	20	180	167	93		40	35	87		220	202	91	4	
영암	284	28	256	239	93		57	16	28		313	255	81	4	
완도	171	17	154	168	109	②	34	25	73		188	193	102	3	
장성	184	18	166	137	82		37	7	19		203	144	71	3	
장흥	210	20	190	191	100	④	42	12	28		232	203	87	4	
진도	288	28	260	288	110	①	57	25	44		317	313	98	4	
합평	146	14	132	53	40		29	28	96	⑤	161	81	50	3	
해남	208	20	188	188	100	④	41	27	66		229	215	94	4	
화순	177	17	160	149	93		35	19	54		195	168	86	3	
합계	4,508	440	4,068	3,747	92		897	522	58		4,965	4,269	85	75	

※ 기준회비충금은 1/4분기에 완료. / 신규회비는 매월 20일까지 충금을 부탁드립니다. / 도 협회충금계좌 농협 351-0986-9258-53에서 받습니다.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회장 선거규정 시행세칙 개정 대비표 2020. 9. 28

현 행	변 경	비고
<p>제3조(선거관리위원회설치등) 2항 “신설:”</p> <p>회장선출선거인단배정</p> <p>1. 도내 22개 시군협회장(대의원) 다만, 시군협회장으로 도협회 임원으로 재임 중인 자는 부회장 중에서 대리하도록 한다.</p>	<p>제3조(선거관리위원회설치 등) 2항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은 도 협회선거 관리규정 제3조2항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여건이 개선 될 때 까지 중단하고, 영암군관내 거주하는 도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으로 전체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회장선출선거인단배정</p> <p>1. 22개 시군협회 회장과 동호인기준 200명 이상은 4인, 199명 이하 3인 회장선출 선거인단 구성을 50명 이상 100명 이하 로 한다.</p> <p>다만, 시군협회장 중 도협회 임원으로 재임 중인 자는 시군협회 부회장 중 에서 대리하도록 한다.</p>	
<p>기타사항</p> <p>1. 도 협회장의 임기는 2020년12월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되었습니다.</p> <p>2. 도협회장 선거는 40일 이상 80일 까지로 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p>		

## 전라남도계이트불협회 제11대 회장선거일정표

진 명		적 용 기 준	결 정
1	선거관리위원회설치및구성	회장의 임기만료일전 40일까지위원회설치	10월5일오후4시
2	도,시군협회 임원의사임	제11조2항 임원의 사임의경우 위원회구성일까지	10월5일오후4시
3	선거일공고	선거관리위원회구성후5일이내	10월10일
4	투표시간결정	제24조의건 5일이내에 결정13:00~30	13:00~13:30소견발표 13:40~15:00선거인투표
5	선거운동금지제한행위	회장선거공고일부터 투표전일까지	10월11일~11월13일
6	선거인기준제시	제4장1항기준 위원회구성후3일이내	10월8일시군협회통보
7	선거인수의 시군배정	제6조추천선거인배정 (선거일35일전)	10월10일~10월14일
8	시군협회선거인후보자추천	제7조 시군협회선거인추천 (30일이내)	10월15일~10월19일
9	추천선거인후보자명부작성	제8조 시군추천선거인후보자명부작성 (25일이내))	10월20일
10	선거인명부추첨작성(최종)	제9조 선거일전 15일부터3일이내 (시군에명부통보)	10월29일
11	선거인확정시군협회통보	선거인명부작성다음날 시군협회에 통보	10월30일
12	입후보자등록공고	선거인명부작성후선거25일전부터7일간	10월20일~10월26일
13	후보자등록시결격사유개시	제26조 임원의결격사유개시 선거25일전부터7일간	10월20일~10월26일
14	선거인명부열람및 이의신청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확정일전 3일까지	10월30일~11월1일
15	후보자등록.기탁금. 후보자공고	제13조열람시작한 다음날부터2일간 기탁금포함	10월31일~11월1일
16	후보자계순위추첨	제23조 등록마감일 다음날 추첨	11월2일
17	후보자등록공고	후보자 기호추첨일	11월2일
18	1인등록시조치사항	제28조2항의건선거관리위에서 26조의 심의 당선결정	11월2일
19	기표소설치용구 빛 용품	제13조.제14조.제15조적용 (등록후선거전일까지)	11월13일
20	사퇴.사망.무효공고	제18조.제19조.제20조등 행위	11월1일~11월13일
21	선고운동관리, 위반행위사항	제19조후보등록일마감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	11월1일~11월13일
22	선거운동기간	제19조등록일 다음날부터 선거일전까지	11월2일~11월13일
23	투표및 개표참관인 신고접수	제25조(투표.개표참관인)투표소마다2명, 선거일전2일까지	11월12일
24	투표의효력.이의제기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에(선거일부터5일내)	11월14~11월18일
25	위원회 전체회의예정	10월 5,12일, 16일, 23일, 31일, 11월2일, 3일 13일, 14일	
26	위원회 부분회의예정	11월 ,4일, 5일, 6일 , 7일, 8일, 9일, 10일,11일,12일	